1987년도 추곡 수매 방침과 배경

1987.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圆圈

차 례

1. 1987년산 추곡 수매가격 및 수매량	1
2. 수매가격 및 수매량의 결정 배경	3
가. 추곡 수매가격 및 수매량 결정에서 고려	
사항	3
나. 추곡 수매가격 인상률과 수매량의 결정	.4
3. 추곡수매 실시요령	9
4. 추곡수매의 당면과제·····	11
가. 양특적자의 발생	13
5. 기타 농어촌 지원 대책	·16
가. '88 년산 보리 수매예시가격 10 % 인상······	16
나. 요소비료가격 10% 인하	18
다. 영농자금 상환연기	19
리 노이스드고 노초고어개반이 저근츠지	20

圆圈

1. 1987년산 추곡 수매가격 및 수매량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당정협의를 거쳐 올해에 생산된 쌀 수매가격을 작년 대비 14%를 인상하여, 정곡 1등품 기준 80 kg들이 한 가마당 76,590원으로 결정하였읍니다. 그리고 수매물량은 농어가의 출하희망물량의 전량을 수매하기로 하였읍니다.

이에 따라 금년산 추곡의 수매가격은 <표1>과 같이 메 벼 1등품 기준으로 40 kg 가마당 27,600원이며, 메벼 2등 품 기준으로 40 kg 가마당 26,370원입니다.

한편 일반계 쌀의 경우 홍수출하기 때의 쌀값 하락을 막고

표 1 1987 년산 추곡수매가격(메벼)

단위:원

년 산	단 량	1. 등	2 등	등 외	잠정등외
1987	7 40 kg 27,600		26,370	23,470	21,030
1986	40 kg (54 kg)	24,210 (32,690)	23,130 (31,220)	20,590 (27,790)	· 18,450 (24,910)

단경기 때의 쌀값 안정을 위하여 작년의 경우와 같이 농협에서 100 만성을 수매하기로 하였으며, 일반계 수매가격은 농협중앙회에서 정부수매가격과 산지시장가격을 감안하여 적정가격을 결정, 추후 발표할 것입니다.

이러한 추곡수매가의 높은 인상으로 금년산 추곡수매기간 동안 농어촌에 풀려 나가는 자금은 약 1조원에 달하게 됩니다.

2. 수매가격 및 수매량의 결정 배경

가. 추곡 수매가격 및 수매량 결정에서 고려사항

정부가 양곡을 수매하여 방출하는 것은 수확기에 집중적으로 출하되는 양곡을 흡수함으로써 생산자 가격을 지지하는 동시에 수매한 양곡을 적기에 방출하여 곡가를 적정한 선에서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생계와 물가안정을 도모함에 있읍니다.

따라서 수매가격 및 수매량을 결정할 때에는 식량의 자급도를 유지하기 위한 생산자가격 지지와 작황, 영농비 부담이 고려되어야 하고, 현실적인 재정여건, 다른 물가와의 균형문제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수매정책도 전체 국민경제의 테두리 안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할 수 있읍니다.

미곡이 농가소득의 약 34 %를 차지하는 농민 현실을 감안 할 때 농가소득 증대와 미곡의 자급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매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는 소비자 가계 특히 영세민의 가계에 부담을 주며 자칫 물가상승과 쌀 소비감소를 부채질하게 됩니다.

수매가격이 낮게 책정되면 농가소득의 감소와 쌀의 생산이 위축되어 자급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초래됩니다.

이러한 서로 상반된 정책목표를 조화시켜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농민으로부터 높은 값으로 수매하여 소비자에게 싼 값으로 방출하면 되겠으나 이 경우에는 막대한 재정적자가 발 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서로 상충되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조화시키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며, 따라서 수매가격은 경제여건과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추곡수매가격의 결정에 있어서는 예년과 달리 물가 측면보다는 농가의 실질소득 즉 물가상승에 의한 명목상승을 제외한 실질적인 소득을 지지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정책의 목표를 두고 수매가격을 결정한 것이라고 보겠읍니다.

나. 추곡 수매가격 인상률과 수매량의 결정

수매가격 결정의 지표가 되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대

표적으로는 농산물가격과 공산품가격의 협상가격차(鋏狀價格差)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을 공산품가격의 상승률만큼 보상해 줌으로써 농공간의 교역조건을 균형시키는 가격패리티 방식과 소득을 균형시키는 소득패리티 방식, 그리고 미곡생산비를 보상해 주는 생산비보상방식 등이 있읍니다.

또한 전체 국민경제의 흐름을 역행할 수 없다는 명제하에 물가동향도 한 지표가 됩니다.

수매가격과 관련되는 주요 물가는 그동안 온 국민이 합심 노력하여 온 결과 계속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즉 도 매물가는 지난 9월말 현재 작년의 같은 시기에 비하여 1.3 % 상승되었고 소비자 물가와 농가구입가격도 3~4% 상승 된 수준에서 각각 안정되고 있읍니다. 여기에 비료, 농약, 농 기계 등 주요한 영농자재의 가격도 '82년 이래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작황 또한 평년작을 유지하고 있기 때 문에 국민경제내의 순수한 경제적 입장에서만 본다면 수매가 격 인상요인은 3~4%선에 불과하다고 파다되었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가수준은 물론 농촌노임의 상승,생산비 증가율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 하더라도 수매가 인상률은 7

상 승·률 비 고
1987 제조업체 임금인상 (연평균) '87. 9 현재 19.1 % 인상
1988 공 무 원 봉급 인 상 11.0 호봉승급 포함시 13.6 %

표 2 근로자 및 공무원 봉급 인상률

~ 8 % 선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어민의 소득 증대 지원과 경제작물의 가격불안정, 누증되어 있는 농가부채, 태풍피해 등에서 오는 농어촌의 어 려움을 감안하여 농어민을 위로하고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어 려운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으로 이 번의 파격적인 대폭 인상이란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 여름의 태풍과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농작물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수량감소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피해정도에 따라 그 일부를 이미 보상해 준바 있고 금년도 추곡수매가 14%의 대폭 인상속에는 다시 지난 여름 피해가 감안되었다는 점에서 피해농가에 대한 이중적지원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겠읍니다.

한편 추곡의 명목수매가격을 농가구입 가격지수(1980=100)로 디플레이트한 실질수매가격을 산출해 보면 전년대비 명목수매가격인상률이 25~40% 수준으로 대폭 인상되었던 1974~80년간에는 쌀수매가격인상률이 농업자재구입가격인상률에 미달한 결과 실질수매가격인상률은 극히 낮은 수준이거나오히려 전년에 비해 하락추세에 있었읍니다. 그러나 1984년이후부터는 쌀실질수매가격이 전년대비 5~7%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년도의 경우는 실질 미가수준으로 볼 때전년에 비해 9.7%나 인상되었읍니다. 이는 쌀수매가격인상률 14%가 농업자재구입가격(농가구입가격지수)인상률 3.2

표 3 쌀 실질수매가격 추이(정곡 80*kg* 2등품 기준)

단위: 워

	명	목	실	질
연 도	수매 가격	전 년 대 비 인 상 률 (%)	수 매 가 격*	전 년 대 비 인 상 률 (%)
1974	15,760	38.5	52,533	3.0
1975	19,500	23.7	52,561	0.1
1976	23,200 19.0		50,108	△ 4.7
1977	26,000	12.1	47,970	△ 4.3
1978	30,000	15.4	42,553 -	△11.3
1979	3 6, 600	22.0	45,636	7.2
1980	1980 45,750		45,750	0.2

^{*} 명목수매가격을 농가구입가격지수(1980=100)로 디플레이트 하였음.

%를 크게 웃돌아 실제로 농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1974년 이래 그 어느해보다도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계층에서는 최근의 도시근로자임금인상수준('87.9 현재 19.1% 인상)을 감안하여 추곡수매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근로자임금 인상문제와 최종상품인 추곡수매가 인상문제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비교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읍니다.

따라서 쌀생산비중 노력비(1986년도 10 a 당 쌀생산비중 노력비의 비중 26.1%)를 최근의 도시근로자 임금인상 수준인 19.1%선으로 인상해 준다고 하더라도 생산비인상요인은 5%

이고 '86 년도 1등품 가마당 수매가격 대비 노력비의 비중을 보면 17%로써 도시근로자임금 19.1% 상승을 감안해도 '87 년도 추곡수매가격 인상요인은 3.3%에 불과합니다. 또한 최 근의 도시근로자 임금수준으로 농촌노임이 상승한 것으로 가 정하더라도 금년도 추곡수매가격 인상요인은 7~8%이었으 나 정부에서는 농가의 실질소득증대지원을 위하여 그보다도 두배가 높은 14%로 인상률을 결정한 것입니다.

더욱이 금년산 추곡수매가격 인상률 14 % 는 '82 년 이래 최고로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물가가 3 ~ 4 % 선에서 안정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어민의 실질소득 보장면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인 것입니다.

한편 수매물량은 대부분 농어민의 희망을 받아 들여 추곡수 매사상 처음으로 농어가의 출하희망 전량을 수매하기로 하였 으며 이와 별도로 농협을 통하여 일반계 벼를 100 만섬 수매키 로 하였읍니다.

· 표 4 수매가 인상률과 도매물가상승률 비교

	' 75	'80	'81	'85	'86	'87. 9
추곡수매 가 인 상 률	% 23.7	25.0	14.0	5.0	6.0	14.0
도매물가상승률(전체)	26.5	38.9	20.4	0.9	△ 2.2	1.3

3. 추곡수매 실시요령

그동안 민원의 소지가 있던 농가별 출하량 결정은 농가의 출하희망물량 전량을 수매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출하일정은 작년과 같이 통고하는 것이 아니라 출하농민이 직접 참여한 마을 영농회에서 지역실정 및 농가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위임하였읍니다.

특히 올해는 집중호우나 태풍 등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가 컸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피해를 입은 벼는 잠정등의 규 격을 정하여 수매함으로써 재해를 당한 농어가를 적극 지원 키로 하였읍니다.

그리고 출하 농어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매현장을 더 늘려 작년도의 7,974 개소에서 금년에는 8,100 개소로 늘 렸읍니다.

또한 수매대금은 현장에서 당일에 지급하며 일체의 영농자 금이나 공과금과 상계하지 못하게 하였읍니다.

수분함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등급에 차이가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자연부락 단위로 전국에 예비점검용 수분측정기 53,083 대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44,135 명의 예비점검원을 위촉하여서 수분함량 초과로 인한 등급 손해를 받지 않도록 하였읍니다.

등급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당일에 재검사를 하여 재판 정을 내리게 하고 불합격된 양곡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건조 또는 재조제하여 합격, 수매되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였읍니다.

추곡수매는 생산농가만이 출하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정한 출하일에 수매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으로 연기할 수 있읍니다.

그리고 계획된 수매물량은 단 한 농가의 한 가마라도 수매 하기로 하였읍니다.

4. 추곡수매의 당면과제

정부는 매년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85년에는 생산량의 19.4%, 작년에는 생산량의 15.9%나 되는 벼를 수매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수확기에 정부가 많은 양의 벼를 수매하는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확직후 홍수출하기에 적절한 가격으로 대량 수매 함으로써 수확직후의 쌀 값 하락을 막아 농가소득을 보호하 려는 것입니다. 수확기에 일반계 벼의 시장가격 결정의 한 기 준으로서 수매가격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의 수매는 꼭 필요합니다.

둘째, 식량자급을 유지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곡류 전체의 자급도는 '86년 현재 44.5 %로 계속 하락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곡인 쌀과 보리의 자급이라도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큽니다. 쌀의 자급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신품종 벼의 생산이 적절한 수준에서 조정ㆍ유지되어야 하는 데 정부수매는 신품종 벼의 생산을 지속시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세째, 수매한 쌀을 소비자에게 적절한 가격으로 방출하여

영세한 소비자의 가계를 보호하며 단경기의 쌀값 폭등을 막아 물가안정도 꾀할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정부미의 일반미 대체효과가 적어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짐에 따라 정부는 농협을 통하여 일반미를 수매・방출하고 있으며, 통일계 벼의 일부를 정부양곡도 정공장의 자주미로 유통시키고 있읍니다.

네째, 흉년 또는 국가 비상사태의 식량부족에 대비하여 일 정한 양의 쌀을 비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읍니다.

이와 같은 목적하에서 정부는 수확기에 벼를 시세보다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수매하였다가 단경기에 비교적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방출하는 소위 이중곡가제를 실시하여 왔읍니다. 이 제도는 수확기의 쌀값을 안정시킴으로써 쌀 자급유지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읍니다. 또한 수매한 쌀을 단경기에 처렴한 가격으로 방출함으로써 소비자 가계의 보호는 물론이고 쌀값을 비롯한 물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여 왔읍니다. 그러나 이같은 이중가격제는 매년 막대한 양의 양특적자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는 정부재정운용에 어려움을 주고 있읍니다. 또한 최근에는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정부미의 방출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등 현재 정부의 양곡관리제도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읍니다.

가. 양특적자의 발생

정부에서 수매한 가격에 금리, 보관료, 도정료, 수송비 등 조작비를 가산한 판매원가로 방출한다면 양특적자는 발생하 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수매한 쌀을 판매원가로 방출하게 되 면 쌀값이 너무 높아져 소비자가계 특히 영세민의 가계에 큰 압박을 주게 됩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판매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방출한 결과 양특적자가 발생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특히 이번에 추곡 수매가를 14 %나 인상하면서도 이러한 수매가 대폭인상이 일반물가의 상승을 유발시켜 모처럼 정착된 물가안정기조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당분간 정부미 방출가격을 올리지 않고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읍니다. 따라서 정부미의 방출가격은 현 수준인 80 kg가마당 53,080 원으로 유지됩니다.

이번의 추곡수매방침의 결정에 따라 이중곡가제로 인한 80 kg가마당 적자폭이 금년도의 27,880 원에서 내년에는 37,160 원으로 9,280 원이 더 늘어나고 양곡재고도 9월말 현재 873 만섬, 연평균 1,100 만섬으로 이에 소요되는 금리, 보관료 등을 가산하면 양특적자는 내년에도 총 3,600 억원 정도가 새로

이 발생합니다.

한편 보리의 경우에도 총 260억원 정도의 양특적자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양특적자의 누적규모는 올해의 1조 6,670억원이 내년말에는 정부의 재정보전 2,790억원을 받고도 총 1조 7,740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양특적자는 1983 년까지는 매년 한국은행에서 돈을 꾸어서 충당해 왔읍니다만 이 결과 한국은행에서는 돈을 그만큼 더 많이 발행하게 되어 물가를 올리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읍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극히 제한되어 있는 예산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는 1984년 3,304억원, 1985년 4,500억원에

표 5 연도별 곡종별 양특적자의 내역

단위:억원

 연도별	쌀	, 보리쌀	기타 잡곡	소 맥 분 가격보조	총결산	재정 보전	누적결손
1970 ~ 80	△ 5,584	△ 3,015	160	△1,280	△9,719	_	△ 9,719
1981	△ 218	△ 1,268	45	/ -	△1,441	-	△11,160
1982	△ 179	△ 1,157	31		△1,305	_	△12,465
1983	△ 2,599	△ 851	80	_	△3, 370	_	△15,835
1984	△ 3,576	△ 528	45	_	△4,059	3,304	△16,590
1985	△ 2,994	△ 490	34	_	△3,450	4,5 00	△15,540
1986	△ 3,596	△ 160	26		△ 3,730	3,500	△15,770
합 계	△ 18,746	△7,469	421	△ 1,280	△ 27,074	11,304	

이어 1986년에도 3,500억원을 양특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원한 바 있읍니다. 이는 결국 양특적자 발생에 따른 부담 을 전 국민이 나누어 짐을 뜻하며 건전한 재무구조의 정착을 위해 바람직한 조치라고 하겠읍니다.

쌀의 양특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미의 방출가격을 수 매가격에 조작비를 합한 가격으로 정하면 되겠으나, 이 경우 쌀값이 너무 오르게 되어 물가를 자극하고 소비자 특히 영세민의 가계에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미의 방출가격을 일시에 대폭 올리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양특적자를 줄일 수 있는 한 방안으로서 수매가격을 낮게 책정하거나 수매량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하여 볼 수도 있는 데 수매량의 감소는 별도의 수확기 미가 안정대책의 수립이 전체되어야 하며, 수매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것은 농어민의 증산의욕 감퇴와 농가소득 감소를 초래하여 도시와 농어촌간 의 소득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할 우려가 있읍니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양특적자를 줄이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생산자인 농어민이나 소비자의 단기적 이익만을 위하여 양특적자의 규모를 무조건 확대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추곡수매가격과 수매량의 결정에 있어서는 쌀 자급유지면, 농가소득면, 물가면, 소비자 가계면, 정부 재정면 그리고 식량자급도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5. 기타 농어촌 지원 대책

가. '88년산 보리 수매예시가격 10% 인상

최근 보리는 식용과 주정용 이외에도 가공부문까지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수요확대에 부응하는 반 면 겨울철 농한기의 노는 땅과 일손을 활용하여 농어가 소득 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작목이기 때문에 보리 수매가격을 최대 한 높이기로 하고 그 인상률을 10 %로 결정하였읍니다.

따라서 <표6 > 과 같이 겉보리는 조곡 40 kg가마당 1등품이 '87년의 15,220원에서 '88년의 16,740원으로 1,520원이 올랐고, 쌀보리의 경우에는 1,720원, 맥주맥의 경우에는 1,730원이 각각 인상되었읍니다.

이와 같이 보리수매가격 인상률 10 %는 83년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내년도 보리재배면적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 으로 보입니다.

표 6 '88 년산 보리 수매예시가격

(단위: 원 /조곡 40 kg)

	1		등	2	등	h	외	
			'87	' 88	'87	'88	'87	'88
 겉	耳	리	15,220	16,740	14,390	15,830	11,920	13,110
쌀	보	리	17,240	18,960	16,460	18,110	13,950	15,350
맥	주	맥	20,130	21,850	19,040	20,690	15,980	16,740

표 7 보리수매예시가격 인상률과 도매물가상승률 비교

	'75	'80	'81	' 85	'86	'87. 9
보리수매가인상률	% 22.1	20.0	12.5	5.5	7.5	5.0
도매물가상승률(전체)	26.5	38.9	20.4	0.9	△2.2	1.3

이에 따라 정부는 보리재배를 농어민의 자율적인 의사에 맡기되 계약에 따라 생산된 물량은 전량 매입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계약재배면적을 작년보다 43.7% 늘어난 23만 정보로 잡고 농협으로 하여금 보리 생산농어가와 현재 계약재배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보리 계약재배가 확대되면 보리재배에 의한 농 어가의 소득은 올해보다 약 770억원이 더 증대될 것으로 기 대되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계약재배 농어가의 생산의욕 고취를 위하여 종자대, 비료, 농약 등 자재대로 300억원 상당을 외상으

로 공급하며, 영농자금중에서 별도로 100 억원을 확보하여 특별융자지원을 할 것입니다.

나. 요소비료가격 10% 인하

정부는 농어가의 영농비 부담을 덜어주고 보리재배에 필요한 영농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농협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 요소비료가격을 10월 16일 0시부터 10% 인하하여 25 kg 포당 현행 5,560원에서 5,000원으로 560원을 내렸읍니다 복합비료 등은 '82년 판매가격 결정이후 원자재 가격상승등으로 가격을 인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농비 경감과 균형시비를 위하여 현재의 가격수준을 앞으로도 유지하기로 하였읍니다.

정부는 앞으로 '88 년부터 시행될 비료판매 자유화를 계기로 비료의 수입개방, 관세인하, 경쟁체제의 유지와 함께 현재 농협이 정부위촉사업으로 시행 중인 비료공급을 농협자체

표 8 요소비료가격 인하 (단위: 25 kg 대당, 원) 요 소 비 료 현 행 조 정 인 하 폭 5,560 5,000 △ 560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농가가 보다 싼 값에 비료를 사서 쓸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다. 영농자금 상환 연기

정부는 자금수요가 많은 연말의 농어촌자금사정을 덜어 주고 자금의 집중회수로 인한 농산물 집중출하와 이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87년도 영농어자금중 12월 말까지 상환분 1,600여억원을 '88년 2월말까지 연기하여 상화토록 할 계획입니다.

영농자금 상환연기는 새마을영농회에서 배정된 연기한도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협의 결정하고, 특히 일반재해를 입 었거나 농작물 집중출하에 따른 가격하락 등으로 연내에 상환 이 어려운 농가를 우선 선정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이미 지난 태풍 및 집중호우로 농작물 50% 이상의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지원된 959억원에 대하여 향후 2년간 상환을 연기할 뿐 아니라 이자도 면제하기로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피해농어가에게 특별생산자금으로 900억워을 지워하였읍니다.

이외에도 농아민 여러분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정부 는 종래의 주곡 소득만으로 농어가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이

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작년 3월부터 농어촌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읍니다. 특히 농공지구 조성, 도로, 교육 의료 등 농어촌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 농어민 여러분의 소 득증대와 부담경감을 최대한 뒷받침해 나가고자 합니다.

라. 농외소득과 농촌공업개발의 적극추진

이상에서 살펴본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 외에도 정부에서는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해 농어민들이 간접적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있읍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농가소득은 농업조수입에서 경영비를 뺀 농업소득과 농업 이외의 경제활동에서 얻어지는 농외소득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해서는 증산이나 가격인상 등을 통해 조수입을 높이거나 혹은 비료값인하와 같이 생산비를 낮추는 방법도 있지만 그밖에 공업이나 상업 및 서비스업을 겸업하거나 혹은 이들 부문에 취업을 통해 농외소득을 올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읍니다.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농어촌지역에 공 업개발을 확대하는 것인데 이는 농어민들에게 농사 외에 새 로운 일자리를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가공용 농산물의 생산 확대와 이들 농산물의 현지 가공을 통한 수급조절과 가격안 정, 그리고 기업체들이 납부하는 지방세 수입과 관련산업의 육성 및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농어촌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개발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새마을공장 건설이나 농어촌부업단지의 육성 등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읍니다 만 도시지역에 비해 워낙 불리한 농어촌의 공업입지조건과 기술인력 부족 등으로인해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였읍니다 그러나 1983년말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의 제정을 계 기로 이제까지 농촌공업개발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한 농공지 구 개발을 비롯하여 농산물가공공장 건설과 관광농업 개발 등 종합적인 농외소득증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읍니다.

농공지구란 농어촌지역에 조성하는 소규모 공업단지로 여기에 공장을 집단적으로 유치하여 농어민들이 공장취업을 통해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1984년 강원도 횡성군 등 7개 지구를 지정한 이래 1987년 9월까지 51개 시군에 67개 지구, 2,549천평을 농공지구로 지정, 개발하고 있읍니다. 이들 농공지구에 입주한 업체는 583개로 현재진행 중인 공장건설이 완료되어 완전히 가동될 경우 약 10 만명의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는 1991년까지는 전국에 180여개의 농공지구를 개발하고 약 40만명의 농어민들에게 공장에서 일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간 1조원에 가까운 농어가소득을 증대시킬 계획으로 있어서 농어민 여러분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니다.

이밖에도 정부에서는 산지복합농산물가공공장과 농어촌부 업단지의 육성 및 관광농업과 같은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이들 부문에서 얻어지는 농외소득 이 현재 38% 수준에서 1991년에는 농사에서 얻어지는 소 득과 같은 수준인 50%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공장취업 등에서 얻는 농외소득이 오히려 농사에서 얻는 소득을 훨씬 웃돌고 있는 일본이나 대만의 예를 보더라도 농촌 공업개발을 통한 농외소득증대 구상은 영세소농이 대부분인 우리나라 농어가의 중요한 육성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농 어촌지역에 공업단지를 조성하거나 입주업체를 유치하는 것 만으로는 농어가소득증대와 직결될 수 없으며 또한 공업단지를 지정, 조성하고 공장을 유치하여 가동되기까지는 최소한 2~3년의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농외소득개발시책의 효과를 얻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또한 농업생산을 위주로 하는 농어촌지역에 갑작스러운 공업개발은 전통문화의 파괴나 공해확산 등 부정적인 효과도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에서는 이들 농촌공업개발의 부정

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한편 긍정적인 효과를 보다 증폭시킬 수 있도록 관련시책을 보완해 나갈 방침입니다.

圆圈

E23 1987년도 추곡 수매방침과 배경

1987년 10월 28일 발행

발 행 인 김 영 진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3][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록 1979년 5월 25일 제5-10호 전화 962-7311

인 쇄 처 東洋文作即開株式會社

《비 매 품》